

#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7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  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김 경, 김기덕,  
김성준, 김원태, 남창진,  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  
박유진, 박철성, 서준오,  
성흠제, 송재혁, 오금란,  
왕정순, 우형찬, 유정인,  
유정희, 이민옥, 이상훈,  
이승미, 이영실, 이원형,  
이종태, 이종환, 임종국,  
전병주, 정준호, 최재란,  
한 신, 허 훈, 홍국표  
의원(33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, 다문화자녀 교육지원,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및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, 전문 취업교육,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- 다만, 수도권 내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,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족해 본 조례 개정으로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함 (안 제7조의3)
- 나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(안 제25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)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,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
2.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
3.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,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, 대학, 경찰청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7조의3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 지원)</u> 시장은 외국  <u>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  원 중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자  리잡고,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 교육</u></li> <li><u>2.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</u></li> <li><u>3.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 정하는 교육</u></li> </o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25조(협력체계 구축)</u> 시장은 외국  <u>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  하여 교육청, 대학, 경찰청, 관련 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  축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25조</u> (생 략)</p>	<p><u>제26조</u> (현행 제25조와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3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)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평생교육국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년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7조의3	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	940,920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  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병준  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중헌  
추   계   분   석   관      김지혜  
☎ 02-2180-7952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## [붙임 1]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웹페이지

###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

🏠 바로가기



#### • 소개

- 수준별 다국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#### • 수강가능언어

- 한국어,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러시아어, 독일어, 프랑스어 등